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1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조성 및 기금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경으로 기금전출금 300억원 편성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용자지원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고자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표 2-1〉 기후변화기금의 수입·지출 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편성목	당초계획 (C)	변경계획 (D)	증·감 (D-C)
합 계	68,068	98,068	30,000	합 계	68,068	98,068	30,0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801	14,801	-	용자 사업비	23,500	23,500	-
예탁금원 금회수	-	-	-	비용자 사업비	32,572	32,572	-
이자수입	785	78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6,331	6,331	-	예치금	11,992	41,992	30,000
보조금	9,262	9,262	-	반환금및 기타	-	-	-
전입금	-	30,000	30,000				
예치금회수	36,889	36,889	-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1)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재무활동에 포함되는 예치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2)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94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지출항목인 예치금을 현행(119억 9,200만원)보다 300억원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변경범위가 250.2% 증가되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 예치금의 증액편성은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사업 등 지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여유자금 300억원 전액을 기후변화기금의 통장에 넣어두고 하반기 수요에 수시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나
- 예치금을 현행보다 일시에 250.2% 증액할 경우, 잠재적 수요에 신속한 대응은 가능할 것이나 기금지출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일 수 있어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기금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되는 바
- 입법취지에 따라 동 기금에 대한 하반기 지출수요가 발생될 경우, 필요시 원포인트 지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 지출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3)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안제출 기한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 지난 8월16일 제출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중 **기후변화기금 전출** 300억원이 편성되어 기금운용부서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이미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지난 8월 27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의안의 제출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회기시작 15일전”이 아닌 회기시작 불과 3일 전인 8월 28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의회에 안건을 심사받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중 “주요내용”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고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로부터 의결 받도록 정하는 것으로서

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생략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2.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융자지원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고자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이 지출계획중 예치금 30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계획에 해당하는 기타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